기술용역 계약서

주식회사 원익IPS(이하 '갑'이라 한다)와 [㈜중부전기](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기술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별첨 1. 용역과제 계획서]에 기술된 바와 같은 용역과제를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 대상)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실질적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의 대상은 [별첨 1. 용역과제 계획서]에 기술한 바와 같다. 단, 본 계약은 '갑'의 본사(경기도 평택시진위면 진위산단로 75) 및 별관동(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3) 중 본사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3조 (용역 범위)

본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첨 1. 용역과제 계획서]에 기술한 바와 같다.

제4조 (용역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2017 년 02 월 01 일 부터 2018 년 01 월 31일까지 연간계약으로 하며, '갑'과 '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은 쌍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인력의 투입)

① '을'은 다음에 정한 조건 이상의 인력을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을'의 업무를 수행 시 '갑'의 인력을 동행시킬 수 있다.

조 건	인 원	비고
책임자(특급전력기술자)	1명 이상	분기점검
전담인력(중급전력기술자)	2명 이상	연간 3회 실시





책임자(특급전력기술자)	1명 이상	연차점검
전담인력(중급전력기술자)	5명 이상	연간 1회 실시
책임자(특급전력기술자)	1 명이상	월차점검
전담인력(중급전력기술자)	1 명이상	월1회 연간 8회실시

- ② '을'은 본 용역에 투입될 인력의 학력, 자격 및 기존의 연구업적을 포함한 신상명세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갑'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용역의 완료)

- ① '을'은 제4조의 용역기간 내에 본 용역 범위에 따른 과제를 완료하고 용역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용역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보고서 를 검수하여야 한다.
- ② 본 용역의 완료일은 '을'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갑'이 승인 통보하는 날로 하며, '갑' 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1항의 용역보고서의 승인을 지체할 수 없다. 만일 '갑'이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용역보고서 승인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을'의 용역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날을 본 용역의 완료일로 한다.
- ③ '갑'은 용역보고서 또는 용역 결과불여 불완전하거나 미비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용역보고서 불승인을 통보하고 일정한 기한 내에 보완 또는 대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을'이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갑'의 요구사항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갑'은 서면통지를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필요한 보완을 할 수 있다. 이 때 보완 등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⑤ '갑'은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중대하거나 보완 등이 불가능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을'에게 서면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제공자료 및 정보의 보관과 폐기)

- ① '을'은 본 용역 과제의 수정, 추가, 확인 등 사후 보완작업을 위하여 용역 완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갑'이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 ② '을'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및 계약 수 행과정에서 지득한 '갑'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비 및 지급방법)

- ① 본 용역은 연간 총 12회에 걸쳐 진행하며 총 용역비는 일금일천육백팔만원 (₩16,080,000--)(VAT 별도)으로 한다.
- ② '을'은 '갑'에게 각각의 점검을 수행한 후 수행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받은 후 제1 항의 용역비를 청구한다. "갑"은 '을'의 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총 용역비 를 12회에 분할하여 '갑'의 정기 결제일에 지급한다.

제9조 (분기/연간 점검 및 보고서 제출)

'갑'과 '을'은 합의하에 공동으로 용역기간 중 월차점검 년 8회/분기,반기 점검 년 3회/연차점검 년 1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각 점검 종료 시로부터 7일이내 '갑'에게 점검완료보고서 원본 2부와 전자문서를 제출한다. 또한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용역결과 발표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 및 부수협정 기타 개별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수 있다.
 -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성 처분을 받았을 때



- 2. 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 3.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및 부수협정 기타개별약정에 의한 계약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4.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 5.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약정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부수협정 기타 개별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본 계약 또는 부수협정 기타 개별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일방의 업 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 되어 서로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해지'의 경우 해지일 이후에 본 계약 의 효력이 상실되어 서로 정산의무를 부담한다.
- ⑤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을'은 '갑'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의 수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⑥ '갑'의 귀책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일까지의 용역비집행정산서 및 용역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을'에게 정산한다.
- ②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본 용역의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의 유지)

- ① '을'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갑'으로부터 제공 환율 정보(형식을 불문한다) 및 유지보수 서비스에 따른 결과물 일체를 항시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자신의 하수급인,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해서 '갑'의 승낙을 받아비밀정보를 제공한 제 3 자에게도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
- ② 제 1 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며, '을' 은 '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일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을'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의 사업장 및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게 되는 경우 '갑'의 정보보호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CD-Writer, USB 저장매체,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의 이동성 저장매체를 반입 및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전산장비를 '갑'의 사업장 등으로 반입 또는 반출할 시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승낙을 받고 '갑'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이를 사용해야 한다.
- ⑤ '을'이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 배상)

-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을'이 제4조에서 정한 용역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제6조에 따라 용역보고서를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용역기간 다음 날부터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에 대한 승인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총 용역비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연 사유가 '갑'에게 있거나 '갑'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을'은 '갑'에게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상계의 특약)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이 취득한 채무불이행 또는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상 지위 등의 양도급정)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기한 계약장의 지위 및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모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②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등)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고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갑'과 '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진정한 의사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별첨 1] 용역과제 계획서 1부.





2017년 월 일

"갑"
주식회사 원익IPS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대표이사 하 윤 희

"을"
[업체명]㈜중부전기
[주소]경기도 평택시 수촌길 85 대표이사 윤 호 식

[별첨 1] 용역과제 계획서

과제명

㈜원익 IPS 전기점검 용역

□ 용역 목적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 점검항목에 적합한 전기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 '갑'측에 발생되는 전기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을 '을'측에서는 신의를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갑'측에 발생되는 전기 관련 자문에 '을'측은 성실히 답변에 응해주어야 한다.
- □ 용역 대상

본사 시설 중 22,900V 8,000KW 수전설비 380V 550KW 발전설비



□ 용역 범위



연차점검 (년 1 회실시) - 하계휴가 중 실시

- 1. 변압기,배전반,분전반,특고압모선 열화상 측정 및 기록표 작성
- 2. 변압기 2차측 메인차단기에서 전원 품질 분석 및 기록표 작성
- 3.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및 기록표 작성
- 4. 계전기 시험 및 기록표 작성

분기,반기 점검 (년 3회실시) - 1월, 4월, 10월 2째주 실시

- 1. 변압기 배전반 분전반 특고압모선 열화상 측정 및 기록표 작성
- 2.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및 기록표 작성
- 3. 반도체동 Clean Room 장비 분전함 분기별(년 4회실시) 열화상 측정 및 보고서 제출

월차점검(년8회 실시) - 분기,반기, 연차점검 월 이외의 매월1회 실시 1.외관점검 및 부하측정

현장대리인의 선임 (현장대리인: 박 현 수)

[별첨 2]

준법경영 실천 서약서

당사는 (주)원익아이피에스가 준법경영 선포와 준법경영 헌장 및 준법강령 등의 제정을 통해 투명한 기업경영,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 등 준법경

영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익아이피에스의 노력에 동참하고 협력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서약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1. 당사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원익아이피에스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부패, 비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익아이피에스의 준법경영에 관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 및 준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당사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원익아이피에스에 대한 입찰 과정, 거래 준비 과정 및 그 이행 과정을 막론하고 어떠한 단계에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원익아이 피에스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또는 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거 나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3. 당사는 원익아이피에스와 생대화에 있어 어떠한 음성적인 거래에 대한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의하지도 않겠습니다.

당사는 상기 사항을 항상 숙지하고 실천에 최선을 다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익아이피에스가 취하는 어떠한 제반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17_년 __월 __일

상호 (주)중부전기

주소: _ 경기도 평택시 수촌길 85

대표이사: 윤호식

